

#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기숙사 입사 안내

2026-1학기 기숙사 입사와 관련하여 입사지원서, 건강진단서, 관리비, 식비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입사 대상 및 기간

- 가. 기숙사 입사 대상 : 2026-1학기 기숙사 입사 희망 신입생
- 나. 기숙사 입사 기간 : **2026. 3. 01(일) - 3. 02(월)**
  - ※ 예비학교 참여자의 경우 2월 21~22일 조기 입소 가능함
- 다. 26-1학기 거주 기간 : **2026. 3. 3(화) - 6. 22(월)**
- 라. 입사 시 배정 건물 : 여자(성문관), 남자(성학관)/ 호실 배정은 예비학교 참여 시 안내

## 2. 제출 서류

※ 제출서류(입사지원서, 건강진단서) 기한 내 미제출 시 기숙사 입사 불가

- 가. 입사지원서
  - 제출 방법 : 기숙사 입사신청서[첨부1]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(제출주소: [dorm@ggu.ac.kr](mailto:dorm@ggu.ac.kr))
  - 제출 기한 : **2026. 2. 27일(금)까지**
- 나. 건강진단서
  - 거주 지역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진(필수 검사항목 : 흉부 방사선 촬영, B형간염-항원항체)
  - 제출 방법 : 진단서를 이메일로 제출(제출 주소: [dorm@ggu.ac.kr](mailto:dorm@ggu.ac.kr))
  - 제출 기한 : **2026. 2. 27(금) /추가모집 등으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입사 당일까지 인정**

## 3. 기숙사비 및 식비: 1,587,000원 [기숙사비 : 672,000원(112일\*6,000원) + 식비 : 915,000원(183식\*5,000원)]

- 가. 납부 기간 : **2026. 2. 11(수) - 2. 27(금)**
  - ※ 식비는 3.3~6.22 기간 동안의 월~목으로 산출함(금,토,일,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출 일자에서 제외함)
  - ※ 식비의 경우 의무식을 원칙으로 하되, 급식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의무식 제외 대상의 경우 제외
  - ※ 기간 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 입사로 간주
- 나. 납부 계좌 : **농협 461058-51-015234**
- 다. **반드시 학생 본인 이름으로 관리비 및 식비 함께 금액 입금**
  -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기숙사(041-731-3063)로 연락
- 라. 건물 출입 임시 카드키
  - 교내 모든 건물 출입은 학생증으로 가능하니, 학생증 관련 사항은 추후 학사 공지 확인
  - 교내 출입 임시 카드키 관련 문의 : 교학팀 041-731-3213

## 4. 입사를 위한 버스 운행

- 가. 예비학교 참석을 위한 버스 운행(교학팀 별도 공지)
- 나. 버스 운행 일자: 2026. 3. 01(일) - 3. 02(월) / 총 2회 운행
- 다. 버스 운행 노선표

[3.01(일)] 학교(13:00)- 대전역(14:30) - 대전터미널(14:40) - 학교(16:00)  
[3.02(월)] 학교(13:00)- 대전역(14:30) - 대전터미널(14:40) - 학교(16:00)

## 5. 기숙사 현황 및 지참 용품

- 호실은 1인 1실 형태로 제공
- 호실 내 가구: 침대, 매트릭스, 책상, 의자, 옷장, 신발장, 에어컨
- 기숙사 건물 내 이용 가능 시설: 노래방, 당구장, 헬스장, 세탁실, ATM기(농협)

**필수 지참:**침구류(이불,베개)

**선택 지참:**욕실용품(세면도구, 슬리퍼, 드라이기 등), 세탁.청소용품(휴지통, 물티슈, 화장지, 세제, 섬유유연제, 빗자루 등), 그 외 개인용품(필기구, 컴퓨터 등), 개인 의약품 등  
※학내 세탁실 및 노래방 시설 이용 시 동전(500원)이 필요함

- 6. 문의:** - 기숙사 사무실 041-731-3063~3064  
- 식비 : 경영관리팀 041-731-3315  
- 학생증 및 임시 출입 카드: 교학팀 041-731-3213

2026. 2. .

## 금강대학교 기숙사

2024학년도 제 3차 급식평가위원회 결과 공지 참고 [\[공지확인하기\]](#)

### <금강대학교 학생 식비 환급 기준>

시행: 2024. 11. 05

제 1항(식비 환급 기준) 식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한다.

1. 퇴사(휴학, 퇴학, 자퇴 및 강제퇴사)하는 경우 - 퇴사생의 경우, 일할 계산하여 퇴사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식수 전액을 환불한다.
2.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훈련 - 일할 계산하여, 해당 일수만큼 환불한다.
3. 중도취업 및 그 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일 경우, 환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잔여일수만큼 전액을 환불한다.

제 2항(의무식 제외대상)

1. 의무식 제외대상은 의무식비 환급신청 기한 내에 관련부서에 신청한 심의대상자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납부금액 환급을 진행한다. (단, 의무식 카드를 이용해 식사한 경우 해당 부분은 매식 금액으로 계산한 뒤 차액 환급 진행)
2.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3과목 이하의 수강하는 경우에는 의무식 대상에서 제외한다.
3. 졸업 필수요건인 봉사활동 1과목과 K-MOOC은 과목 수에서 제외한다.
4.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를 기준으로 의무식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※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식 환급 신청을 요할 경우, 종합병원(3급 이상)에서 발급받은 확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급식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의.

(개인병원 '소견서' 는 제출 불가 / 장염, 위염 등의 일시적인 질병은 심의 불가)

5. 의무식비 환급신청 기한은 매 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 일반공지에 공지한다.  
기타 사유로 개강 연기 시, 개강 후 2주 이내 환급신청 진행(공휴일 제외)한다.

제 3항(식비 환급 비율)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(2항 제외)의 식비 환급 비율에 대하여는 잔여식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 (단, 개강일로부터 3분의 2 지점이 지났을 경우에는 식비 환급이 불가하며, 제 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)

제 4항(급식평가위원회)

1. 급식운영방법 결정, 의무식비 환급, 식단 적절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평가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
2. 급식평가위원회 소집 및 심의 사항은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